

과징금의 산정기준(제41조 관련)

1. 적용기준

가.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 중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. 이 경우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제 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.

나.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.

다. 과징금의 부과는 처분 전년도에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 다만, 신규사업·휴업 등의 사유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.

2. 산출방법: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 × 위반일수

3.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(1일 과징금 금액)

연간 매출액(백만원)	기준금액 (원/일)	연간 매출액(백만원)	기준금액 (원/일)
100 이하	60,000	5,040 초과 ~ 5,840 이하	620,000
100 초과 ~ 120 이하	100,000	5,840 초과 ~ 6,700 이하	660,000
120 초과 ~ 200 이하	140,000	6,700 초과 ~ 7,620 이하	700,000
200 초과 ~ 340 이하	180,000	7,620 초과 ~ 8,600 이하	740,000
340 초과 ~ 540 이하	220,000	8,600 초과 ~ 9,640 이하	780,000
540 초과 ~ 800 이하	260,000	9,640 초과 ~ 10,740 이하	820,000
800 초과 ~ 1,120 이하	300,000	10,740 초과 ~ 11,900 이하	860,000
1,120 초과 ~ 1,500 이하	340,000	11,900 초과 ~ 13,120 이하	900,000
1,500 초과 ~ 1,940 이하	380,000	13,120 초과 ~ 14,400 이하	940,000
1,940 초과 ~ 2,440 이하	420,000	14,400 초과 ~ 15,740 이하	980,000
2,440 초과 ~ 3,000 이하	460,000	15,740 초과 ~ 18,600 이하	1,020,000
3,000 초과 ~ 3,620 이하	500,000	18,600 초과 ~ 20,000 이하	1,060,000
3,620 초과 ~ 4,300 이하	540,000	20,000 초과	1,100,000
4,300 초과 ~ 5,040 이하	580,000		